

지역안실련 조직·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: 2014년 2월 20일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지역안실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지역안실련의 명칭은 해당 광역자치단체명을 딴 ‘○○안실련’이라 칭하며, 구체적인 명칭은 <별표1>의 규정에 따른다.

제2장 설치 및 폐지
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에 사무실을 둔다.

제4조(승인) 지역안실련의 창립을 위해서는 창립위원회를 구성한 뒤 창립대회 2개월 이전에 향후 1년간 예산사용 및 조달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(이하 ‘안실련’) 사무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
제5조(업무보고) 지역안실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연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안실련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주요업무 보고 및 사업실적
2.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
3. 지역안실련 총회 자료집, 의사록

제6조(폐지) ① 안실련은 매년도 제5조에 의해 지역안실련을 평가할 수 있으며, 활동실적 및 제반 운영상태가 취약한 지역안실련은 폐지할 수 있다.

② 이 경우 안실련은 지역안실련에 서면으로 폐지 사유를 통보해야 하며 지역안실련은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본부에 소명할 수 있다.

제3장 회원 및 임원

제7조(회원의 자격) 지역안실련 회원의 자격은 본 연합 정관 제2장제6조 준용한다.

제8조(임원의 명칭과 정수) 지역안실련의 임원은 정관 제35조 제2항에 준용하며 아래와 같다.

1. 공동대표 : 5명 이내
2. 부대표 : 5명 이내
3. 사무총장 : 1명
4. 사무처장 : 2명 이내
5. 감사 : 3명 이내
6. 어머니안전지도자회장 1인(당연직 사무처장 겸임)

- 제9조(임원의 선임)** ① 지역안실련 공동대표는 지역안실련 총회에서 선출한뒤 안실련 사무처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② 지역안실련 부대표, 사무처장, 감사는 지역안실련 총회에서 선출한뒤 지역안실련 공동대표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- ③ 지역안실련 사무총장은 지역안실련 총회에서 선출한뒤 안실련 사무처에서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지역안실련 어머니안전지도자회장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어머니안전지도자 대표자회의에서 선출하고 지역안실련 공동대표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3장 회 의

제10조(총 회) 지역안실련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.

- 제11조(총회의 소집)**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1월중에 개최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지역안실련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, 안실련 이사 중 1인 이상이 참관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.
- ③ 회원이 요구한 임시총회는 개최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며, 이후 7일 이내에 총회 참석자 명부, 회의록을 날인하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3항에 의거 지역안실련 공동대표가 지정된 기일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개최 권고 등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소집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12조(총회결의 정족수) 총회는 정회원수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운영위원회) 지역안실련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14조(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구성) ① 지역안실련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. ② 지역안실련 운영위원회는 정관 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대표의 재량으로 참석자를 추가할 수 있다.

제4장 산하조직

제15조(어머니안전지도사회) ① 지역안실련의 효율적 안전문화 활동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안실련 어머니안전지도사회를 둘 수 있다.

② 기초자치단체 어머니안전지도사회의 임원은 회장과 총무로 구성하며 각 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.

③ 지역안실련 어머니안전지도사회의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, 총무로 구성하며 기타 임원의 설치는 지역안실련 공동대표의 승인으로 추가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지역안실련 어머니안전지도사회 회장은 기초자치단체 어머니안전지도사 대표자회의의 선거로 선출하며, 지역안실련 공동대표가 임명한다.

제16조(지 부) ① 지역안실련의 효율적 안전문화 활동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지부의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지역안실련의 명칭은 <별표1>에 따른다.

③ 지역안실련 산하의 지부의 소재지는 지부관할 주소지에 한한다.

④ 지역안실련 지부는 해당 지역 회원 50인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부창립 2개월 이전에 해당 지역안실련에 제출하여야 하며, 지역안실련은 14일 이내에 검토를 거쳐 안실련 사무처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⑤ 지역안실련 지부의 임원은 지부장(대표) 1인과 사무국장 1인 이상으로 하며 각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지역안실련의 승인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.

⑥ 지역안실련 공동대표, 사무총장, 어머니안전지도사회장은 지부의 지부장(대표) 및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없다.

제5장 보 칙

제17조(규정의 변경) 본 규정은 안실련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.

제18조(소 급) 본 기준 이전의 설치된 지부의 경우 본 규정의 시행에 따라 소급적
용한다.

제19조(준 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안실련 정관을 적용한다.

<별표 1>

지역안실련 및 지부 명칭, 임원 명칭 규정

지역안실련	예시	지역안실련 지부	예시
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○○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	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	○○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○○지부 <u>○○안실련</u>	경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고양시지부 <u>고양안실련</u>
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○○안실련	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기안실련	○○안실련 ○○시(군,구)지부 <u>○○안실련</u>	경기안실련 고양시지부 <u>고양안실련</u>
○○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	경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		
○○안실련	경기안실련		
공동대표	경기안실련 공동대표	지부장 <u>대표</u>	경기안실련 고양시지부 지부장 <u>고양안실련 대표</u>
사무총장	경기안실련 사무총장	사무국장	경기안실련 고양시지부 사무국장